

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(안) 심사보고서

1. 제안사유

충청북도 교육위원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에 있음.

2. 주요골자

가. 교육위원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.

- 1) 부교육감
- 2) 본청의 실·국장·담당관 및 과장급
- 3) 교육장과 그 소속 공무원중 도교육청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자.
- 4) 교육연구원장, 과학교육원장, 단재교육원장, 중앙도서관장, 학생도서관장, 학생종합야영장장과 이들의 차하위 직급에 있는자.

3. 제안근거

-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(지방자치법의 준용)
- 지방자치법 제37조(행정사무처리 상황의 보고와 질의 응답)

4. 심사의견

충청북도 교육위원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하여는 교육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권위있는 답변을 위하여 그 범위를 정함이 필연적이며 본안을 심사한바,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위배됨이 없고 충청북도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준용되어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출석·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

제 1 조 (목적)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 24 조 (지방자치법 제 37 조의 준용)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(이하 "교육위원회"라 한다)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범위) 교육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1. 부교육감
2. 교육감의 보조기관중 실·국장·담당관, 과장급
3. 법 제 43 조의 규정에 의한 하급교육행정기관의 교육장과 그 소속 공무원중 도교육청 과장과 동일직급이상인 자
4. 법 제 41 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의 장과 차하위직급에 있는 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